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 후 변 화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4. 08.

목 차

제 1 장 사업의 개요	1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1.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1
1.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4
1.4 사업의 내용	5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심의결과	 8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수렴 개요	8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9
2.2.1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9
2.2.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12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접근성, 개발여건 등이 양호한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임
- 사업지구는 평택~파주고속도로(천천IC, 봉담IC),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내리IC, 샘내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남봉담IC), 수인분당선(오목천역, 어천역)이 인접해 있고, 인천발 KTX 어천역(2025년 예정), 신분당선 연장(호매실~봉담), GTX-C노선 개통(수원역)시 수도권 내 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임
- 아울러 인근 지역은 화성봉담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화성봉담2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생활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정주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원대, 장안대, 협성대 등 다수의 대학이 입지해 있어 학생, 청년 등의 주택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사업 시행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 화성시 내 정부의 「공공주택 3080+」 주택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1.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도시의 개발사업(표 1-1 참조) 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표 1.2-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전
사업규모	2,289,715㎡	-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항 관련 [별표2]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제3조(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및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에 포함하여 실시

〈표 1.2-2〉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제3조(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등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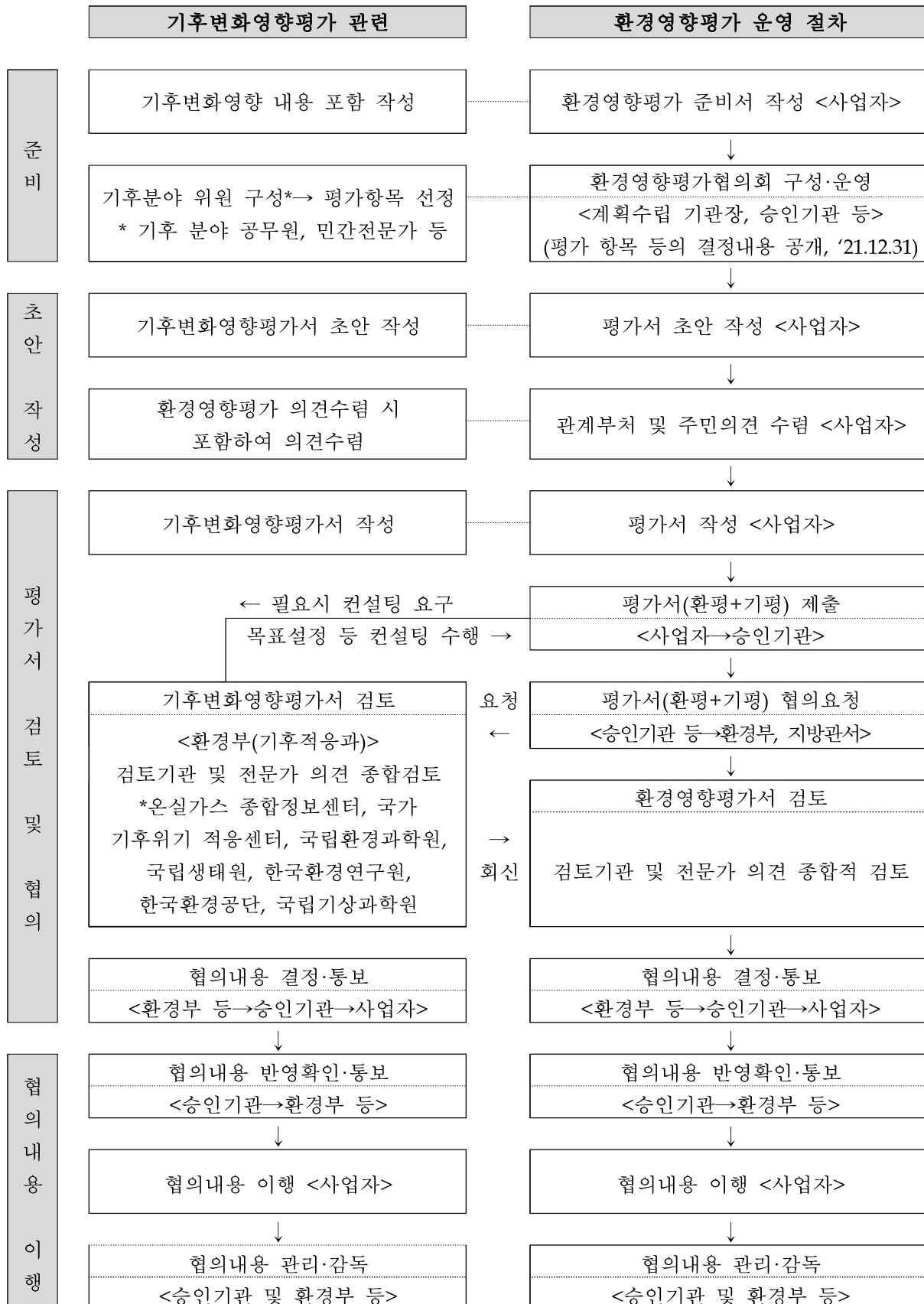
자료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 본 사업은 도시의 개발사업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마.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사업규모	2,289,715㎡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



(그림 1.2-1)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도

1.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1 추진경위

- 2021. 08.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국토교통부)
- 2021. 11. 23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대면심의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내용 포함
- 2021. 12. 3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904호)
~2022. 01. 14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포함
- 2022. 10. 24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과-3637)
- 2022. 12. 20 :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5호)
- 2024. 08. : 기후변화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심의)
- 2024. 08. :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3.2 향후계획

- 2024. 09. :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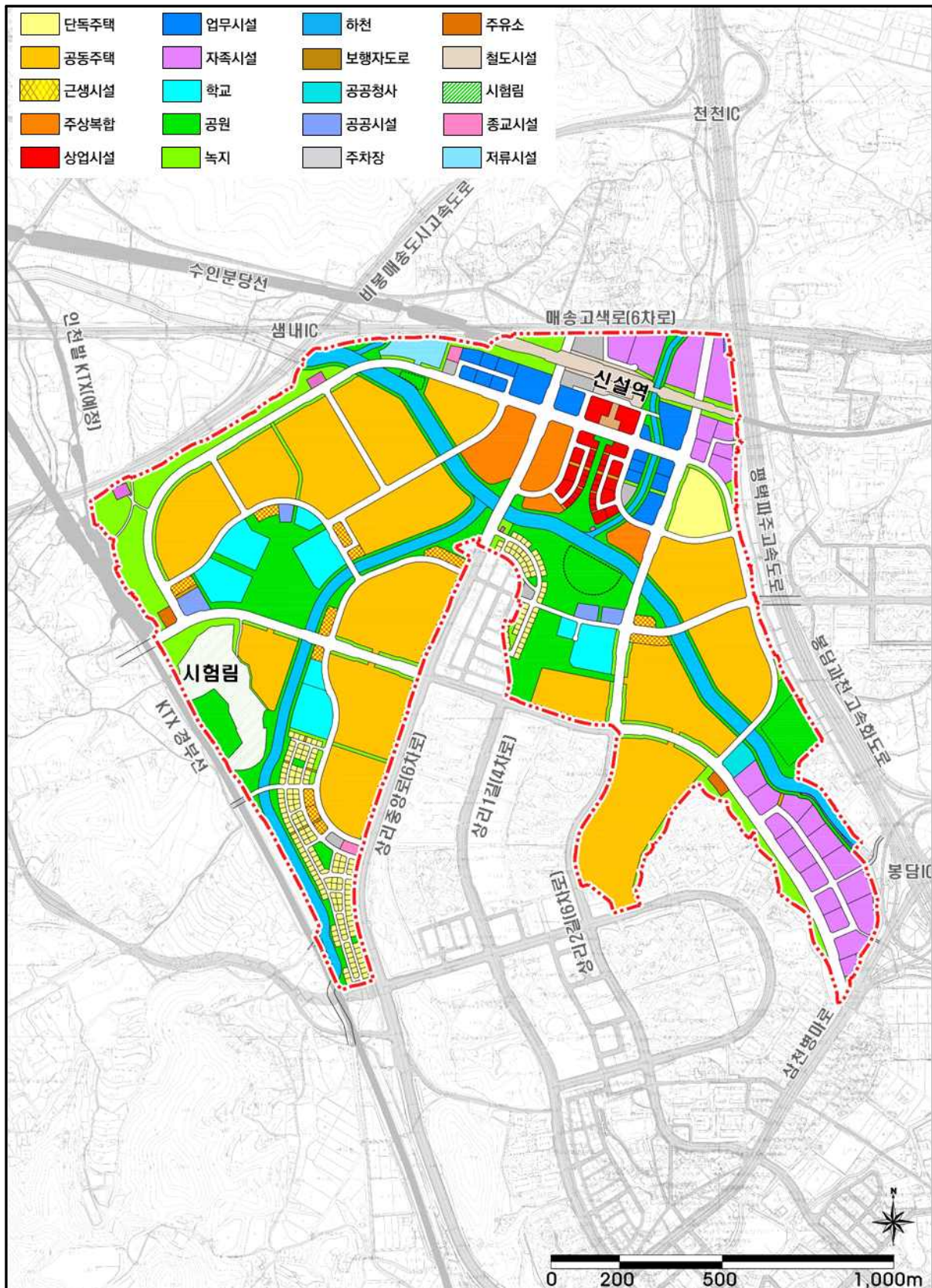
1.4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일원
- 규 모 : 2,289,715m²
- 수용인구 및 세대 : 42,105인, 18,306세대
- 사업기간 : 2022 ~ 2034년
- 사업시행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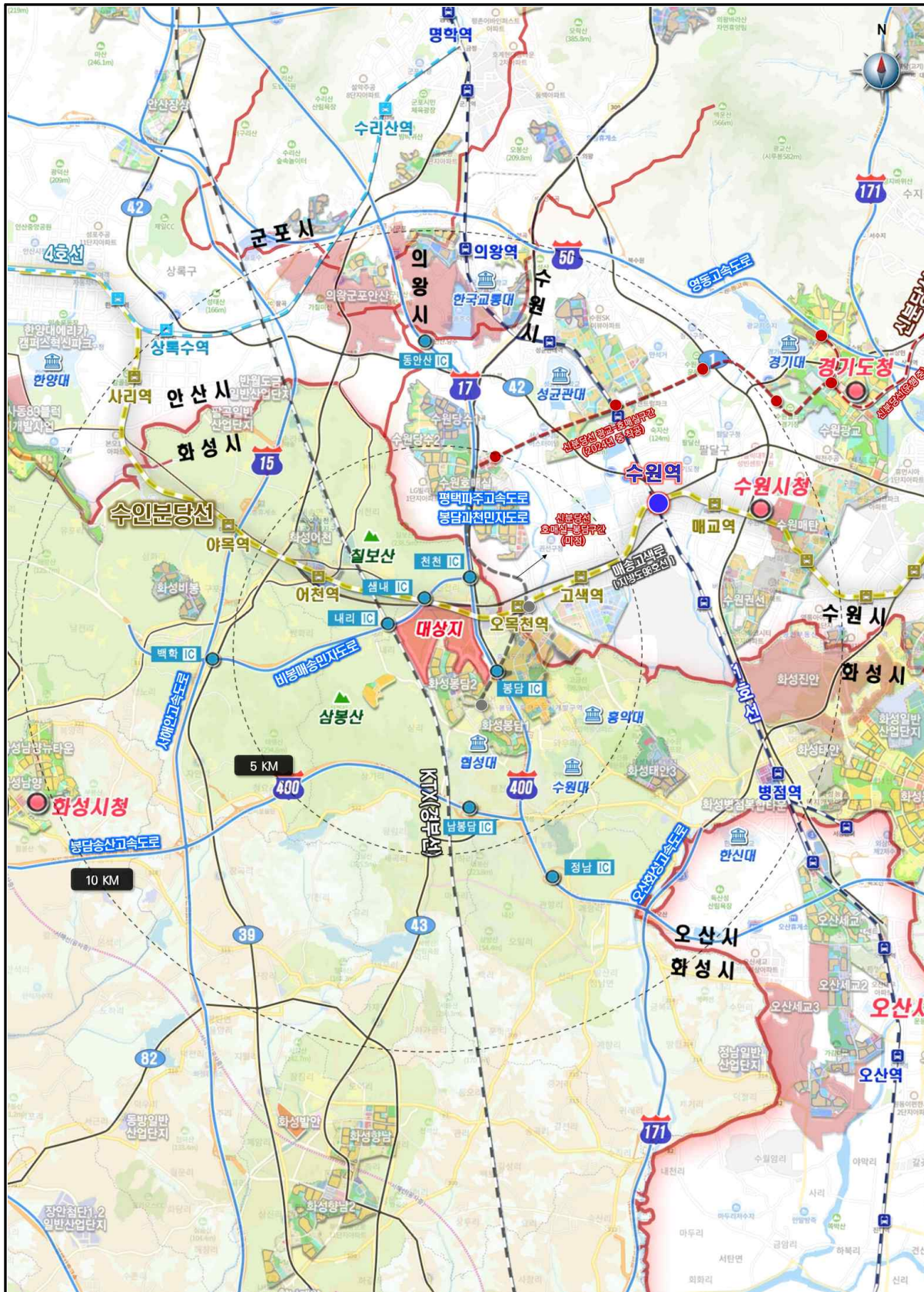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 고
합 계			2,289,715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812,263	35.5	
	단독주택	일반형	51,547	2.3	
		블록형	23,593	1.0	
	공동주택		712,731	31.1	
	근린생활시설		24,392	1.1	
공공 시설 용지	계		1,477,452	64.5	
	주상복합		56,927	2.5	주거(90%미만) : 상업(10%)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 계	225,569	9.7	
		상업시설	30,084	1.3	
		업무시설	50,949	2.2	
		공공청사	5,420	0.2	우체국 1개소
		사회복지시설	5,004	0.2	노유자시설 1개소
		문화시설	2,900	0.1	도서관 1개소
		복합커뮤니티	4,849	0.2	2개소
		자족시설	126,363	5.5	
	공원 녹지	소 계	654,890	28.6	
		공 원	293,924	12.8	중복결정 : 저류지(2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녹 지	196,038	8.6	
		광 장	2,566	0.1	일반광장
		보행자도로	2,137	0.1	폭 10m 이상
		하 천	148,917	6.5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4개소)
		저류시설	11,308	0.5	저류지 1개소
		(저류시설)	(16,938)	-	공원 내 중복결정(2개소)
	교육시설		81,141	3.5	유3, 초3, 중1, 고1
	도로	소계	345,318	15.2	
		보행자전용도로	1,588	0.1	폭 10m 미만
		일반도로	343,730	15.1	
	철도시설		34,523	1.5	기 결정면적(수인분당선) : 24,258m²
	주차장		15,696	0.7	6개소
	기타 시설	소계	63,388	2.8	2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000	0.2	주유소 2개소
		종교시설	3,117	0.1	2개소
		수도공급설비	2,528	0.1	기 결정면적(광역 및 공업용수도) : 1,374,m² (하천 내 중복 : 658m²)
		전기공급설비	1,597	0.1	C/T : 1개소
		하수처리시설	1,811	0.1	오수중계펌프장 3개소(기존1, 신규1, 이설1)
		(하수처리시설)	(18,000)	-	하수종말 처리장 공원 내 중복결정(1개소)
		시험림	50,335	2.2	

주) 현재 지구계획 수립 중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주) 현재 지구계획 수립 중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그림 1.4-1) 토지이용계획도(안)



(그림 1.4-2) 사업지구 위치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제19조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위원장 등 3인
 - 국토교통부, 관련 전문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2024.08.07 ~ 08.14)
- 결정사항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표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 ○ ○	승인기관
1	위원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평가부	○ ○ ○	협의기관 (추천전문가)
2	위원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 ○ ○	협의기관 (추천전문가)

〈표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평가 관계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선정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3, 환경부」 등을 참조하여 선정하였음

〈표 2.2-1〉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결과 및 사유

분야	항 목	선정결과	사유
온실 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일반평가	○ 사업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중점평가	○ 공사시 장비투입, 운영시 냉·난방에 따른 다량의 온실 가스 배출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중점평가	○ 온실가스 감축목표·감축 전략·방안 수립 및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 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일반평가	○ 기후변화 현황,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파악,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을 조사하여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분석	중점평가	○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변화 영향평가	중점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인자별 취약성 및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별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

- 본 개발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법적 규제지역,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영향권과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을 설정하였음

〈표 2.2-2〉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별 평가범위·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
온실 가스 감축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 공간적범위 - 사업지구 ○ 시간적 범위 - 평가서 작성시점	○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 온실가스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배출량, 저장·흡수량 현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공간적범위 - 사업지구 ○ 시간적 범위 - 공사시 - 운영시(국가비전 목표시점 2050년)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임업, 축산업, 폐기물 등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재구성하여 배출량 산정 ○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원단위 기준을 선정한 후 인벤토리별 배출량 전망의 근거 설정, 목표시점의 배출원단위 산정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사업대상지 면적, 예상 인구·세대수 등 활용하여 배출전망치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 공간적범위 - 사업지구 ○ 시간적 범위 - 공사시 - 운영시(국가비전 목표시점 2050년)	○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연계하여 감축목표·감축 전략·방안 수립 ○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적극 반영 - 에너지 자립률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건축물 적용, 녹색교통 활성화, 폐기물 발생량 감축, 탄소 흡수원 조성·확충,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적용, 토지 이용계획(공원·녹지 확대) 등 ○ 분야별 예측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수립·제시 - 사업시행에 따른 분야별(수송, 가정·공공/상업 부문 등) 감축 및 탄소 흡수원 확대방안 강구 - 온실가스 감축측면에서 대안별 비교·분석 및 대안 선정 ○ (온실가스 감축 관련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 반영 여부 제시 - 상위계획 및 각 계획별 정책제언과 본 사업의 감축 전략 상호 비교·검토	

〈표 2.2-2 계속〉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별 평가범위·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
기후 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공간적범위 - 사업지구 ○ 시간적 범위 - 최근 30년 - 가까운 미래(10~20년) - 미래(30년 이상)	○ 기후변화 현황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제시 ○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 제시 - 기후요소 : 기온, 강수, 습도, 풍향, 풍속 등 - 극한기후지수 :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 등 ○ 발생빈도, 경향·주기, 피해유형, 피해대상, 피해규모 등 최근 30년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사례 조사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분석	○ 공간적범위 - 사업지구 ○ 시간적 범위 - 최근 30년 - 가까운 미래(10~20년) - 미래(30년 이상)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예측·분석 - 평가요인 : 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 ○ 기후인자별로 취약성을 신뢰도가 검증된 모델·모형으로 분석. 위험성은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산정 ○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작성, 파급효과·규모 등을 고려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도출 - 리스크 목록 활용(국가 기후변화, 지자체 기후변화, 사업별 예비 기후변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수록된 설문조사 등 활용)	
	기후변화 영향평가	○ 공간적범위 - 사업지구 ○ 시간적 범위 - 최근 30년 - 가까운 미래(10~20년) - 미래(30년 이상)	○ 취약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 전략 및 방안 수립 - 효과·비용·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판단 - 예상되는 기후영향에 대한 적응 방안 마련 ○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을 예상 결과에 대해 제시 ○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 계획 및 시책과의 연관성, 관련 지자체의 도시·군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 고려하여 제시 - 미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해 실행 가능한 저감방안 마련	

주)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참고

2.2.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제21조,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에 따라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포함하여 함께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임

〈표 2.2-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근거

관련법	내용
기후변화 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초안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제20조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32조를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기후변화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시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초안 공고·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화성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초안 요약본을 첨부하여 공고할 계획임
- 공람 기간 : 20~60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해당 지자체(화성시) 홈페이지
 -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초안
- 해당 지자체(화성시) 등에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초안을 비치하여 공람기간 동안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람 장소는 추후 협의할 계획임

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1) 주민설명회

가)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시점 : 초안 공람기간 내(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공고 : 초안 공고(일간 및 지역신문)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개최장소 : 설명회 개최 장소는 추후 협의 후 결정

나) 주민설명회 생략

(1) 생략근거

-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

(2) 후속조치

(가) 신문공고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정보통신망 게시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가) 공청회 개최**

- 설명회 개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 공청회 개최요건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공청회 생략

(1) 생략근거

-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

(2) 후속조치

(가) 신문공고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라. 관계기관 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 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승인기관·협의기관 등에 제출할 계획임

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